

하남시 성과시상금 지급 ·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3215
----------	------

제출연월일 : 2026. 1. .

제출자 : 하남시장

1. 제안이유

- 하남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여 시정발전을 도모하고, 재정기여 우수성과 분야를 신설하여 다양한 업무 영역에서 성과우수자를 발굴하여 적극적인 행정 · 조직 문화 체계 구축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 가. 지급대상(안 제3조)
- 나. 지급분야(안 제4조)
- 다. 실무평가단(안 제5조)
- 라.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 운영(안 제6조)

3. 제정안: 덧붙임

4. 신 · 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서: 덧붙임

6. 예산수반 사항: 덧붙임

7. 입법예고 결과

- 가. 예고 기간: 2025. 12. 30.~2026. 1. 19.(20일간)
- 나. 의견 내용: 의견없음

8. 부서협의 결과

- 가. 규제개혁 관련협의: 해당 없음
- 나. 성별영향 분석평가: 개선의견 없음
- 다. 부패영향 분석평가: 원안 동의

9. 참고사항: 해당 없음

10. 관련부서: 해당 없음

하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하남시 소속 공무원들의 근무의욕을 고취하여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성과우수자 우대 및 성과시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성과시상금”이란 시정 각 분야에서의 성과가 우수하여 지급하는 포상금을 말한다.

제3조(지급대상 및 한도) ① 하남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 소속 공무원 또는 부서에게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성과시상금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지급분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분야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한다.

1. 시정 업무 분야에서 뛰어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2. 중앙행정기관 및 경기도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3. 국·도비확보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4. 재정기여 분야에서 우수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5.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자체평가 및 정부합동평가(경기도 시군종합평가 포함)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둔 경우

6. 그 밖에 시정 시책에 대한 자체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얻은 경우

제5조(실무평가단) ① 시장은 성과시상금의 지급 및 운영 관련 사항을 실무적으로 심사하는 실무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 실무평가단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하남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 ① 성과시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하남시 성과시상금 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시상금 지급대상 선정에 관한 사항
2. 성과시상금 지급액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심사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③ 심사위원회의 기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위원회가 이를 대행할 수 있다.

제7조(지급제외 및 조정) ①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특별한 노력 없이 상급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국·도비를 확보한 경우
2. 법적 의무사업으로 교부되는 국·도비를 확보한 경우
3. 계속사업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필요한 사업으로 이미 성과시상금을 받은 경우. 다만, 평가를 통한 계속사업의 지원여부가 결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동일성과에 대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포상금 및 혜택을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상사업비 또는 부상으로 받은 상금이 개인의 보상 목적으로 추진하거나 추진예정인 경우
 6. 일상 업무 또는 성과가 입증되지 않은 단순사업인 경우
 7. 참가비를 납부하는 방식의 외부평가인 경우
 8. 성과시상금 신청자료(증빙자료 포함)을 허위·과다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 ② 다른 기관 평가결과 부상으로 상금을 받은 경우, 성과시상금 지급 결정액에서 다른 기관에서 받은 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서명		기획조정과
입안자	부서장 직위·성명	기획조정과장 조 대 근
	팀장 직위·성명	조직성과팀장 임 혜 경
	담당자 성명·전화번호	김 진 경 (031-790-5543)

관계법령 발췌서

1 「하남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시행 2024. 4. 9.] [규칙 제1019호]

제23조(지급분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4.4.9.>

1. 시정 업무 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2. 중앙행정기관 및 경기도 평가 등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3. 국·도비확보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 시정발전에 이바지한 경우
4. 그 밖에 시정시책에 대한 자체평가에서 우수한 성과를 얻은 경우

제24조(지급대상) 시장은 시 소속 공무원 또는 부서에 대하여 성과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5조(신청) 성과시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부서장이 성과시상금의 신청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성과시상금 신청서와 관련 증명서류를 갖추어 성과시상금 평가담당부서의 장(이하 “소관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성과시상금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6조(기여율 배분) ① 제25조에 따라 신청한 성과에 다수의 기여자가 있는 경우에는 기여도에 따른 비율을 배분하여 전체 기여자의 서명을 받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소관부서의 장은 기여율의 배분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배분비율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③ 동일한 성과에 대하여 둘 이상의 소속 부서가 신청한 때에는 소관부서의 장은 이를 통합하여 신청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의 신청자는 기여도가 가장 높은 소속부서의 장이 된다.

제27조(신청내용 공개 및 이의신청) 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내용 및 심사결과를 내부행정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개된 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소관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내용을 검토하여 위원회의 심사자료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심사) ① 소관부서의 장은 성과시상금 신청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실무평가단과 위원회 심사 자료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성과시상금 지급 규모의 결정은 성과 신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다.

1. 사업목표와 사업계획의 적절성
2. 사업추진 노력과 사업관리의 노력도
3. 성과달성 및 시정발전기여도
4. 사업성과 홍보 실적 등

③ 제2항에 따라 결정된 심사결과는 성과시상금을 신청한 해당부서의 · 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제27조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결과는 이의 신청인에게 따로 알려야 한다.

④ 분야별 심사기준은 별표1과 같다.

제29조(성과시상금의 지급) ① 제28조제3항에 따라 결정 통지된 성과시상금은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성과시상금 지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30조(지급제외 및 조정)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성과시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특별한 노력 없이 상급기관에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국·도비
2. 법적 의무사업으로 교부되는 국·도비
3. 계속사업의 경우와 같이 장기간 소요되는 사업으로 이미 성과시상금을 받은 경우. 다만, 평가를 통한 계속사업의 지원여부가 결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동일성과에 대하여 시에서 운영하는 각종 포상금 및 인센티브를 받거나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상사업비 또는 부상으로 받은 상금이 개인의 보상 목적으로 추진하거나 추진예정인 경우
6. 일상 업무 또는 성과가 입증되지 않은 단순사업인 경우
7. 참가비를 납부하는 방식의 외부평가인 경우
8. 성과시상금 신청자료(증빙자료 포함)을 허위·과다 등 부적절한 방법으로 제출한 경우

② 다른 기관 평가결과 부상으로 상금을 받은 경우, 성과시상금 지급 결정액에서 다른 기관에서 받은 상금을 공제한 나머지를 지급한다.

③ 중앙행정기관 및 경기도 평가 등 우수분야의 지급기준은 별표3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비용추계서(미첨부 사유서)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가. 자치법규안명 및 관련조문

- 하남시 성과시상금 지급·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4조(지급분야), 동 조례 시행규칙안 제9조(수당), 제10조(성과시상금의 지급)

나. 비용 발생 요인

- 성과시상금 지급 및 시군종합평가 시상

2. 비용추계서 미첨부 근거 규정

「하남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4. 작성자: 기획재정국 기획조정과장 조대근